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법 제2조제1호라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연불판매를 통한 금전의 교부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은행법」
2. 「중소기업은행법」
3. 「한국산업은행법」
4. 「한국수출입은행법」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6. 「상호저축은행법」
7. 「농업협동조합법」
8. 「수산업협동조합법」

9. 「신용협동조합법」

10. 「산림조합법」

11. 「새마을금고법」

12. 「보험업법」

13. 「여신전문금융업법」

14.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1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16.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③ 법 제2조제2호나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2.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4.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5.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7.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8.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정리금융회사

9.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

1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1. 「주택도시보증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④ 법 제2조제2호다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
까지에서 규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출자·출연한 회사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3.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4.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
관리회사

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6.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4호라목에 따라 출자·투자한
회사

7. 「보험업법」에 따른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8.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회사

9.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 규정」 제3조에 따른 기금

제3조(담보채권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4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는 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
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을 의미한다.

제4조(고액채권의 범위) ① 법 제3조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액”은 계좌별 대출원금(약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을 기준으로 함) 기준 5천만원을 의미한다.

② 법 제3조제3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계좌별 대출원금 (약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을 기준으로 함) 기준 3천만원을 의미한다.

제2장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관리

제5조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등 통지 방법) ① 법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은 서면을 말한다. 다만 서면에 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서 채권금융회사등과 개인금융채무자 사이에 미리 합의한 방법으로 서면을 대체할 수 있다.

② 채권금융회사와 개인금융채무자는 제1항 단서의 방법 중 복수의 방법에 합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 어느 한 방법으로 통지가 이루어지면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방법에 따라 통지를 발송한 경우 통상 그 통지가 도달하였을 시점에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통지에도 불구하고 도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개인금융채무자의 주소로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통지갈음방법) ① 법 제6조제3항, 제8조제5항 및 제11조제3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통지가 2회 이상 반송되는 경우
2. 등기사항증명서 및 주민등록표에 주소가 적혀 있지 아니하고 주소를 법원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등 채권금융회사등이 개인금융채무자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② 법 제6조제3항, 제8조제5항 및 제11조제3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말한다.

1. 채권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
2. 해당 채권금융회사등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금융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
3. 개인금융채무자의 주소지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 신문지 1개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에 공고하는 방법

제7조(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 내용) 법 제6조제1항제5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미한다.

1. 기한의 이익이 부활가능하다는 사실과 그 요건
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절차,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간이회생· 개인회생· 파산· 면책절차 등 채무조정 제도가 있다는 사실

3. 제1호,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8조(청구 가능 비용) ①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의한 비용
2.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한 채권금융회사등의 채권·담보권 등 권리의 행사·보전(집행해제포함)에 관한 비용
3. 담보목적물 및 개인금융채무자 재산에 대한 조사·추심·처분에 관한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청구할 때는 그 내역과 사유를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

제9조(주택경매 예정의 통지)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 개인금융채무자가 전입신고하여 거주 중인 주택
2.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중 그 기준가격이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른 6억원 이하인 주택(다음 각 목의 금액이 없는 경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에 따른다.)

가. KB부동산시세 일반평균가

나. 한국부동산원의 층별·호별 격차율 지수로 산정한 가격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통지는 영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

금융채무자의 주소(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가 있는 경우 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의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주소를 포함한다)에 하여야 한다.

③ 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개인금융채무자가 주택경매 예정의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내에 요청이 없을 경우 예정대로 경매를 신청한다는 내용

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절차,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파산·면책절차 등 채무조정 제도가 있다는 사실

④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연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을 의미한다.

⑤ 법 제8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개인금융채무자가 경매신청 예정 채무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였으나, 법 제36조에 따라 채무조정 요청을 거절한 경우

2. 다른 채권자가 해당 주택에 대하여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제10조(장래 이자채권 면제 대상)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개인금융채권
2. 연체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개인금융채권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보유한 채권 중 최근 1년 이내 원금과 이자의 변제 내역이 없는 채권

가. 제2조제4항제4호에 따른 대부업자

나. 제2조제3항제8호에 따른 정리금융회사

다. 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라. 기타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

제11조(양도제한 채권)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채권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개인금융채권을 채무자 보호 등의 목적으로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이 출자·출연한 회사에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횟수에서 제외한다.

가. 개인금융채권의 양도인에게 재양도하는 경우

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다. 기타 반복된 채권양도가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개인금융채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

2. 개인금융채무자가 교부를 요청하였음에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채무확인서가 교부되지 아니한 채권
3. 채권원인서류가 존재하지 않거나 명의도용, 대출사기에 의한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으로서 채권·채무관계가 불명확한 채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채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

제12조(양도예정의 통지 대상)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권”은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권리로 담보된 개인금융채권을 말한다.

제13조(양도 예정일 전까지 통지의 사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출연한 회사에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4조(양도예정의 통지 내용) 법 제11조제1항제5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양도 예정 통지서 도달 후 10영업일 내에 채무조정 요청이 없는 경우 개인금융채권이 예정대로 양도된다는 사항
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절차,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간이회생·개

인회생·파산·면책절차 등 채무조정 제도가 있다는 사실

3. 개인금융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

제15조(양수인 평가 필요여부 판단을 위한 연체기간)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90일을 말한다.

제16조(양수인 평가시 고려사항) 법 제1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추심 관련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을 의미한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7조(평가 제외 양수인) 법 제12조제2항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2.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3.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8조(채권양도내부기준 세부사항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채권 양도 업무의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할 때는 채권양도의 방식과 그 외의 채권관리 방식(추심, 추심위탁, 채무조정 등)간의 비용과 편익을 명확히 비교하여야 하며, 이 법의 목적과 개인금융채무자의 신뢰 보

호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제7호에 따른 개인금융채권 양도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권양도 관련 의사결정 체계
2. 채권양도 담당부서 운영
3. 채권양도 현황 보고 체계 및 모니터링 방법
4. 양도 대상 채권의 기준
5. 채권양도 계약 내용
6. 채권양도 관련 임직원의 관리 및 교육
7.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개인금융채무자 보호를 위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3장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시 준수사항 등

제1절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시 준수사항

제19조(채권추심의 제한) 법 제1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채권을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자에 관한 개인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중지·금지명령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2. 제2조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채무자 보호 등의 목적으로 출자·

출연·투자한 회사에 채무조정 신청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채무조정 여부 확정시까지)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에 따른 채무 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후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 경우

4. 채무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의 상속포기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5. 사회부조 및 생활 보호 등이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개인금융채무자의 개인금융채권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6. 법 제4장에 따른 채무조정이 합의되어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

제20조(추심의 착수 통지) ① 법 제15조에 따른 추심의 착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이메일, 우편, 이동전화번호(LMS 등)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할 경우에는 홈페이지에도 공시를 하여야 한다.

③ 법 제15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무자의 방어권 행사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채권추심자의 의무와 추심에 관한 개인금융채무자의 권리 및 권리행사 방법(관련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포함한다.)

2. 채무조정, 분쟁조정,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 법령에서 정한 방어권 행사 방법

④ 법 제15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입금계좌번호, 예금주명 등 입금계좌 관련 사항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대리인 선임 관련 사항

제21조(추심연락에 포함되는 행위 및 추심연락횟수의 계산방법)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추심연락”이란 추심을 위하여 개인채무자의 주소, 거소, 직장 등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전자문서, 모사전송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우편물을 발송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추심연락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약관, 법령 또는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의 통지

2. 개인금융채무자의 문의에 대한 답변 또는 개인금융채무자의 요청에 따른 통지로 같은 날 이루어진 통지

3. 채권자, 채무금액, 연체금액 및 연체기간 등 추심대상 채권에 관한 사항의 단순통지로 별도의 상환독촉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1회만 제외하며 1회 초과 시 추심연락 횟수에 포함한다)

4. 그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 준하는 사유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의 추심연락횟수에서 제외한다.

1. 채권추심자가 개인금융채무자를 방문하였으나 부재중이어서 만나지 못한 경우 등 추심연락이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다만, 방문의 경우 7일에 2회만 제외하며 2회 초과 시 추심연락 횟수에 포함한다)
2. 개인금융채무자가 전화를 받은 뒤 일방적으로 끊는 등 독촉에 필요한 통화를 마치지 못한 경우로서 같은 날 이루어진 2회 이내의 전화 통화
3. 그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③ 동일한 개인금융채권을 다수의 채권추심자가 추심하는 경우 해당 개인금융채권을 추심한 채권추심자의 추심연락 횟수를 모두 합산하여 계산한다.

제22조(추심연락의 유예) ① 법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서 개인금융채권자와 채권추심자간 합의한 기간을 말한다. 동 기간은 1회 연장할 수 있다.

② 법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연락을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인금융채무자와의 연락이 두절될 우려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개인금융채무자가 법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거짓 주장하여 추심 연락 유예를 요청한 경우

③ 법 제1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재난상황에 처한 경우”란 개인금융채무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1조에 따른 재난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1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개인금융채무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이 사고·질병 등으로 수술을 받거나 기타 입원한 경우(동일한 사유로 인한 추심연락 유예는 1회에 한한다)

2. 개인금융채무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의 혼인·장례(동일한 사유로 인한 추심연락 유예는 1회에 한한다)

제23조(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요청)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개인금융채무자는 채권추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추심연락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1. 해당시간에 추심을 할 경우 일상, 사회생활을 저해한다고 보아 1주 28시간 이하로 정하여 채무자가 요청하는 추심연락 제한

2. 개인금융채무자가 특정 주소(주소지와 직장을 모두 포함한다)에 의 방문, 특정 전화번호로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전송, 특정 이메일 계정으로의 이메일 전송, 특정 팩시밀리번호로의 모사전송 등의 추심연락 수단 중 3가지 이하의 수단을 정하여 추심연락 제한(다만, 전화와 방문은 동시에 제한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추심연락 제한을 요청받은 채권추심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추심연락 제한에 응하여야 한다. 그러나 추심연락 제한으로 인하여 추심을 현저하게 제한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이 기간 중에도 추심연락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③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추심연락 제한으로 인하여 추심을 현저하게 제한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4조(채권추심 내부기준) ①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채권추심 내부 기준을 마련할 때에는 채권추심자가 신의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추심의 내용과 절차가 공정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개인금융채무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적합한 방식으로 합리적이고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면서 부채가 상환되도록 추심하여야 한다.
2. 추심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들은 개인금융채무자가 이해할 수 있게 제공하여야 하며 개인금융채무자의 합리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3. 채권추심자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하거나 개인금융채무자보호에
저해되거나 건전한 금융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추심행위를 하
여서는 안된다.

② 법 제20조제2항제7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 채권추심내부기준 위반행위 등을 방지하
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2. 개인금융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신용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채권추심내부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25조(채권추심회사의 이용자보호기준)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
용자보호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3. 임직원의 이용자보호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및 방법과
이용자보호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이용자보호기준의 제정 및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5.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호감시인의 임면절차에 관한 사항
6. 추심 관련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개인금융채권의 추심·관리
·매매 등에 대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7. 영 제24조제1항각호의 사항을 적용하기 위해 확인 및 조사해야

하는 정보 및 제24조제1항 각호 준수여부에 대한 평가 기준, 평가 이후 상황에 맞는 추심업무 방식 등에 대한 사항

8. 추심 업무 수행시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설명해야 하는 중요사항 및 개인금융채무자가 위압감을 느끼지 않는 가운데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사항

9. 개인금융채무자 보호를 위한 개인금융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등 추심업무의 불공정행위 및 부당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

10. 개인금융채무자와의 민원사건 또는 분쟁 발생시 해결절차

11. 고객의 신용에 관한 자료 또는 제반 정보가 업무 외의 목적에 사용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개인금융채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100억원”을 말한다.

③ 보호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금융채무자 보호를 위한 계획의 수립

2. 법령 준수 여부와 관련한 영업실태와 관행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개선

3. 임직원에게 대한 교육 계획의 수립

4. 이용자보호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

5. 업무 전반에 관한 접근 및 임직원에게 대한 각종 자료나 정보제출 요구
 6. 이용자보호기준 위반자에 대한 조사
 7. 이용자보호기준 준수 관련 문제점이나 미비사항에 대한 경영진
또는 유관부서에 시정 건의
 8. 중대한 위법·부당행위 발견 등 필요시 제재의견 표명
 9. 위법사항 등에 대한 업무정지요구
 10. 필요시 이사회를 포함한 모든 업무회의 참여 및 적합성 등에 대한
의견 진술
 11.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보호감시인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 ⑤ 보호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해
서는 아니된다.
1.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라 채
권추심업자가 수행하는 업무 및 그 부수업무
- ⑥ 채권추심회사는 보호감시인을 임명한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⑦ 채권추심회사는 보호감시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임직원에게 요구하면 그 임직원으로 하여금 이에 성실히 협
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채권추심회사는 보호감시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해당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인사상의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⑨ 제3항부터 제8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감시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이용자보호기준)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용자보호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25조 제1호부터 10호까지의 사항. 이 경우 “채권추심회사”는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로 본다.
 2. 개인금융채권의 양수 과정에서 채무자 정보의 정확한 인수, 추가이자 부과 제한 등 법령 준수를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3. 개인금융채권의 재양도·담보물권의 경매 등 매입한 채권의 관리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와 기준에 관한 사항
 4. 법 제13조에 따른 채권매각 내부기준의 마련 및 그 준수를 위한 절차와 기준에 관한 사항
 5. 법 제30조에 따른 채권추심위탁 내부기준의 마련 및 그 준수를 위한 절차와 기준에 관한 사항
 6. 법 제34조에 따른 채무조정 내부기준의 마련 및 그 준수를 위한 절차와 기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개인금융채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직전 사업

연도말 기준 총자산규모 10억원을 말한다.

제27조(등록취소 등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처분) ① 법 제2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처분”이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채권금융회사등
 4.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5. 그 밖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 ② 법 제23조제4항에서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처분하지 않을 수 있는 개인금융채권은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로 보는 자가 개인금융채무자의 사망사실을 알고 있는 개인금융채권으로서 그 채권의 상속 포기가 확정된 개인금융채권을 말한다.

제28조(담보조달비율)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5을 말한다.

제2절 채권금융회사등의 추심 위탁 시 준수사항

제29조(추심 위탁의 통지) ① 법 제25조에 따른 추심 위탁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② 법 제25조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 대상 개인금융채권에 관한 사항

2. 개인금융채권 위탁 예정일

3. 수탁 예정인

4. 채무조정의 조건과 요청 절차·방법

5. 개인금융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탁 예정 통지서 도달 후 5영업일 내에 채무조정 요청이 없을 경우 채권 추심을 예정대로 위탁한다는 사항

6. 개인금융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

7. 추심횟수 제한, 연락제한요청권 등 채무자보호법상 추심관련 채권자·채무자의 권리의무 및 권리구제방법

8.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30조(추심 위탁 계약에 필요한 사항 등) 법 제28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권추심행위와 관련된 일체의 위임업무 내용

2. 채권추심회사의 추심업무 수행을 위하여 채권자가 수탁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

3. 개인금융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

4. 변제금 수령 간주 사유 등의 추심실적 인정범위
 5. 채권추심활동 및 법적절차 진행 소요비용 부담
 6. 수수료 등의 지급기준, 시기, 청구 및 지급방법
 7. 변제금 입금방법, 입금계좌, 추심대금 인도방법(입금 기한)
 8. 위탁받은 개인금융채권의 해지 및 반환 등 변경에 관한 사항
 9. 성실의무, 개인정보, 개인신용정보의 누설금지, 손해배상, 중복추심의 위임금지에 관한 사항
 10. 계약 효력발생일 및 약정기간, 계약변경·해지에 관한 사항
 11. 채권자와 채권추심회사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송관할법원 등
- 제31조(채권추심회사의 위법행위 발견시 채권금융회사등의 조치) ①채권금융회사등은 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채권금융회사등이 채권추심회사의 위법행위를 발견한 즉시 당해 채권추심회사에 대하여 위법행위의 시정을 요구해야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한 채권금융회사등은 7일 이내에 채권추심회사의 위법행위 내용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③ 영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채권금융회사는 채권추심을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 불이익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채권금융회사등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위법행위 내용
 2. 적용법률 규정

3. 위반 횟수

4. 시정 요구내용

5. 그 밖에 위법 행위의 보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32조(추심위탁 내부기준)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추심위탁 내부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심위탁 담당부서 및 추심위탁 관련 의사결정 체계

2. 추심을 위탁할 채권수탁추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고려하는 평가기준

3. 제2호에 따른 평가의 방법

4. 채권수탁추심업자와의 계약에 포함할 사항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개인금융채무자 보호를 위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4장 채무조정

제33조(채무조정의 안내)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개인금융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방법

2. 채권금융회사등의 채무조정 내용

3.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채무조정 요청서 및 첨부서류

4. 채무조정 요청의 접수 및 처리과정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 또는 파산

제도 관련 정보

6.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 제도 관련 정보

7.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제34조(채무조정내부기준 마련·운영)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무자의 상환능력과 채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연체한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는 것이 어려운 개인금융채무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조정이 제안될 수 있도록 내부기준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그밖에 채무조정내부기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5조(채무조정내부기준 포함사항) 법 제3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채무조정 업무 관련 의사결정의 체계
2. 채무조정 요청서 및 첨부서류
3. 법 제34조제2항제1호 및 제5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전문성·윤리성 등을 갖추기 위한 자격 및 교육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사항, 단, 정책적 목적으로 채무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금융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임명일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만 해당한다)인 경우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설립된 신용회

복위원회가 신용·부채관리 및 채무조정에 관한 개인의 전문성·

윤리성을 인증하는 자격과 관련된 교육을 24시간 이상 이수할 것

나. 그 밖의 경우 : 가목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것

4. 채무조정 합의 성립 후 이행관리 및 변제계획 불이행 시 안내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적정한 채무조정에 필요한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36조(개인금융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 등)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날
이후 3개월을 말한다.

제37조(개인금융채무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① 법 제35조제2항4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2.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38조(채무조정의 거절) 법 제3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
2. 그밖에 금융위원회가 채무조정 요청을 거절할 필요가 있다고 정
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39조(채무조정 처리 등)①법 제3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채권금융회사등이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채무조정 여부에 관한 결정 내용을 통지하는 경우, 개인금융채무자와 합의된 다음 각 목의 방법 중 1가지 이상의 수단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나. 전화

다. 기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단

2.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채권금융회사등이 작성한 채무조정안에는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대출과목명, 대출채권번호 등 채무조정 적용 대상 채권에 관한 사항

나. 개인금융채권의 원리금 감면, 변제기간 연장 등 채무조정 내용에 관한 사항

다. 변제계획 불이행 시 안내에 관한 사항

라. 채무조정 합의해제 기준에 관한 사항

마. 채무조정업무 담당자, 연락처

바.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금 납입계좌 정보

사. 그 밖에 채권금융회사등이 법 제34조에 따른 채무조정 내부기준에 정하는 사항

아. 그 밖에 개인채무자가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채무조정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개인회생 또는 파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 등 개인금융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채무조정 수단을 안내하여야 한다.
 4. 개인금융채무자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채무조정안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37조제3항의 10영업일에서 제외한다.(최대 10영업일 까지 제한할 수 있다.)
- ② 채권금융회사등은 채무조정에 관련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탁할 수 있다.
1. 채권추심회사가 법 제34조에 따라 채권금융회사등이 수립한 채무조정내부기준에 따라 별도의 재량 없이 채무조정 요청을 처리하는 경우
 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에 위탁하려는 경우
- 제40조(채무조정의 효력) 법 제38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10영업일을 의미한다.

제5장 보칙

제41조(채무조정 합의의 해제) ① 법 제4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인금융채무자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특별한 사정없이 3개월 이상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개인금융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3. 개인금융채무자가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4. 개인금융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 신고, 재산의 도피 및 은닉, 기타 책임재산 감소행위 등을 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5. 개인금융채무자가 채권금융회사등에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6. 개인금융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결정, 변제계획인가결정 또는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7. 개인금융채무자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 등 다른 채무조정 절차를 신청하여 확정된 경우
8. 그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②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제1항제1호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개인금융채무자가 6개월 이상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

제42조(감독·검사 등) ① 법 제41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회사의 개황
2. 채무사항
3. 채권추심 업무실적 등 업무의 현황 등

② 법 제41조제9항에 따라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는 업무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채권추심회사는 매분기의 업무보고서를 매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권추심회사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 제출한 경우 법 제41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2.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고서를 매반기말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그 기준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 제출한 경우 법 제41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 ③ 제2항에 따른 업무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세부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43조(손해배상의 보장) ① 법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란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신용정보협회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협회에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해당 금액을 최소 보장금액으로 하는 보증보험증권을 구매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 ② 법 제45조 제3항에 따른 조치의 최소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권추심회사 : 5억원
2.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 5천만원

- ③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라 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채권매입·추심 관련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손해배상 합의서,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보증

금의 한도에서 협회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호의 신청을 받은 협회의 장은 피해배상 신청내용과 관련한 증빙자료 등을 검토·확인한 후 보증금의 한도에서 배상금을 지급한다.
3.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는 제2호에 따른 보증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4.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는 협회의 장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그 금액만큼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제44조(행정처분 등의 공표) ① 법 제46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 사실의 공개임을 알 수 있는 제목
 2. 상호, 소재지 및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말한다)
 3.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경우 대부업 등록번호 및 채권추심회사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4. 위반행위
 5.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6. 행정처분일·시정명령일 및 그 기간
-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금융위원회가 해당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

령을 한 후 지체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사실을 해당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 사실이 제2항에 따라 게재된 기간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45조(업무의 위탁) ①금융위원회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및 수리
2.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3.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구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의 요구 또는 사실의 확인의 요청
4. 법 제41조제9항에 따른 업무보고서의 접수
5.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심사 및 주의 또는 경고 조치
6. 법 제42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 심사에 관한 업무
7. 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처분 사실 등의 공표에 관한 업무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법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 제42조, 제52조에 따른 업무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채권추심회사등의 영업에 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 및 유관기관의 장 등에게 위탁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47조제1항에 따라 채권추심회사등과 관련이 있는 기관에 유관 채권추심회사등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법 제41조제

1항부터 제3항,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심사 및 주의 또는 경고 조치, 제42조제6항 제4호 또는 제5호의 조치, 제42조제6항 제2호부터 제5호의 조치의 업무를 위탁한다.

1. 「신용협동조합법」 따른 신용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법」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5.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조합: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6.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 제2조제3항제8호의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

7. 서금원, 챔코 : 출투자회사 관리·감독 업무

④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금융감독원장 및 행정기관의 장)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내용을 6개월마다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보고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6조(과태료) 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과태료 부과 기준(시행령 제46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제52 조)	법정 최고액	대부업 외	대부업			
				부과 대상	1차	2차	3차이상
가.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명 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1항 제1호	5,000	<u>법인의 경우</u> 5,000	법인	1,500	3,500	5,000
			<u>법인이 아닌 자</u> 2,500(임직원 1,000)	법인이 아닌 자	500	1,750	2,500
<u>법인의 경우</u> 5,000	<u>법인이 아닌 자</u> 2,500(임직원 1,000)		법인	1,500	3,500	5,000	
				500	1,750	2,500	
나. 법 제41조제5항에 따른 검사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요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제1항 제2호		<u>3,000</u>	법인	1,000	2,000	3,000
				법인이 아닌 자	500	1,000	1,500
다. 법 제41조제9항을 위반하여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아 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업무보고서를 제출한 경 우	제1항 제3호	3,000	1,500	법인	450	1,000	1,500
				법인이 아닌 자	150	500	750
2,000	법인		600	1,000	2,000		
			법인이 아닌 자	200	500	1,000	
<u>2,500</u>	법인		750	1,700	2,500		
			법인이 아닌 자	250	850	1,250	
2,000	법인		600	1,000	2,000		
			법인이 아닌 자	200	500	1,000	
1,000	법인		500	750	1,000		
			법인이 아닌 자	100	250	500	
자.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5항 에 따른 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통지를 갈음하는 방법 을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 하고 경매를 신청한 경우	제3항 제1호	2,000	1,500	법인	450	1,000	1,500
				법인이 아닌 자	150	500	750
1,500	법인		450	1,000	1,500		
			법인이 아닌 자	150	500	750	
1,500	법인		450	1,000	1,500		
			법인이	150	500	75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제52 조)	법정 최고액	대부업 외	대부업			
				부과 대상	1차	2차	3차이상
지(통지를 갈음하는 방법을 포함한다)한 경우				아닌 자			
타. 법 제11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금융채권 양도 예정의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또는 채권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등을 한 날부터 10영업일이 지나기 전에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한 경우	제3항 제4호		1,500	법인	450	1,000	1,500
				법인이 아닌 자	150	500	750
파.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17조를 위반하여 추심연락을 한 경우	제3항 제5호		<u>1,000</u>	법인	500	750	1,000
				법인이 아닌 자	100	250	500
하. 법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금융채무자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3항 제6호		<u>1,000</u>	법인	500	750	1,000
				법인이 아닌 자	100	250	500
거. 법 제25조에 따른 추심 위탁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경우	제3항 제7호		<u>1,000</u>	법인	500	750	1,000
				법인이 아닌 자	100	250	500
너. 법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제3항 제8호		1,000	법인	500	750	1,000
				법인이 아닌 자	100	250	500
더. 법 제37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채무조정 여부에 관한 결정 내용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경우	제3항 제9호		1,000	법인	500	750	1,000
				법인이 아닌 자	100	250	500
러.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추심의 착수에 관한 같은 조 각 호의 사항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제4항 제1호		<u>800</u>	법인	250	500	800
				법인이 아닌 자	80	250	400
머.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속, 성명 또는 연락처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제4항 제2호	1,000	<u>800</u>	법인	250	500	800
				법인이 아닌 자	80	250	400
버. 법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권금융회사등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	제4항 제3호		500	법인	200	400	600
				법인이 아닌 자	50	100	200

과태료의 부과 일반기준(시행령 제46조 관련)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5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